

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

- (일부개정) 2005-09-30 규칙 제 2700호
- (일부개정) 2005-11-04 규칙 제 2702호
- (일부개정) 2005-12-30 규칙 제 2711호
- (일부개정) 2006-03-10 규칙 제 2716호
- (일부개정) 2006-04-21 규칙 제 2721호
- (일부개정) 2006-05-12 규칙 제 2727호
- (일부개정) 2006-08-04 규칙 제 2735호
- (일부개정) 2006-09-29 규칙 제 2751호
- (일부개정) 2006-12-15 규칙 제 2755호
- (일부개정) 2007-01-02 규칙 제 2759호
- (일부개정) 2007-01-05 규칙 제 2760호
- (일부개정) 2007-06-08 규칙 제 2765호
- (일부개정) 2007-06-29 규칙 제 2769호
- (일부개정) 2007-09-07 규칙 제 2772호
- (일부개정) 2007-11-02 규칙 제 2775호
- (일부개정) 2007-12-21 규칙 제 2778호
- (일부개정) 2008-02-29 규칙 제 2782호
- (일부개정) 2008-04-04 규칙 제 2784호 (강원도 소비자 조례 시행규칙)
- (일부개정) 2008-08-08 규칙 제 2793호
- (일부개정) 2008-12-29 규칙 제 2806호
- (일부개정) 2009-04-03 규칙 제 2816호
- (일부개정) 2009-06-23 규칙 제 2822호
- (일부개정) 2009-12-31 규칙 제 2843호
- (일부개정) 2010-04-02 규칙 제 2846호
- (일부개정) 2010-10-29 규칙 제 2859호
- (일부개정) 2011-03-11 규칙 제 2867호
- (일부개정) 2011-04-22 규칙 제 2872호
- (일부개정) 2011-09-16 규칙 제 2881호 (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)
- (일부개정) 2011-12-23 규칙 제 2887호
- (전부개정) 2012-07-13 규칙 제 2901호
- (일부개정) 2012-10-12 규칙 제 2905호 (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)
- (일부개정) 2013-04-26 규칙 제 2920호
- (일부개정) 2013-07-26 규칙 제 2924호
- (일부개정) 2013-10-04 규칙 제 2935호 (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)
- (일부개정) 2013-10-25 규칙 제 2937호
- (일부개정) 2013-11-29 규칙 제 2942호 (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)
- (일부개정) 2014-03-07 조례 제 2951호
- (일부개정) 2014-05-09 규칙 제 2958호
- (전부개정) 2015-01-02 규칙 제 2980호
- (전부개정) 2015-04-10 규칙 제 2991호
- (전부개정) 2015-07-10 규칙 제 2994호
- (일부개정) 2015-10-02 규칙 제 3010호
- (일부개정) 2015-11-13 규칙 제 3014호

(일부개정) 2015-12-31 규칙 제 3019호
 (일부개정) 2016-04-01 규칙 제 3030호
 (일부개정) 2016-04-15 규칙 제 3035호
 (일부개정) 2016-05-20 규칙 제 3036호
 (일부개정) 2016-06-03 규칙 제 3038호
 (일부개정) 2016-08-05 규칙 제 3044호
 (일부개정) 2016-12-30 규칙 제 3056호
 (일부개정) 2017-06-30 규칙 제 3075호
 (일부개정) 2017-10-31 규칙 제 3087호
 (일부개정) 2018-01-26 규칙 제 3099호 (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 (일부개정) 2018-04-13 규칙 제 3103호
 (일부개정) 2018-09-21 규칙 제 3117호
 (일부개정) 2018-12-28 규칙 제 3125호 (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)
 (일부개정) 2019-04-26 규칙 제 3133호
 (일부개정) 2019-09-20 규칙 제 3149호
 (일부개정) 2019-12-27 규칙 제 3157호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
 (일부개정) 2020-03-27 규칙 제 3168호
 (일부개정) 2020-10-23 규칙 제 3190호
 (일부개정) 2021-04-02 규칙 제 3203호
 (일부개정) 2021-04-09 의회규칙 제 3206호
 (일부개정) 2021-12-31 규칙 제 32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
 (일부개정) 2022-04-08 규칙 제 3239호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이 규칙은 「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·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.<개정 2015.11.13.>

제2조(직무)담당관·과장은 실장·국장·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을 보조·보좌하고,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 한다.<개정2019.9.20.>

제3조(분장사무의 조정)실·국·본부장, 의회사무처장, 직속기관장,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·과·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 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·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9.20.>

(중 략)

제 3 장 직속기관

제 6 절 강원도립대학교

제40조(하부조직) ① 강원도립대학교에 교학처·기획홍보처·사무국·산학협력처를 둔다.<개정 2016.4.1.,2022.4.8.>

② 교학처장과 기획홍보처장,산학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4.1.,2022.4.8.>

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6.4.1.>

1. 삭제<2022.4.8.>
2.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
3. 학적관리(휴학, 복학, 제적, 전과, 등록) 및 졸업에 관한 사항
4. 시험, 학점 등 성적관리·학사징계 및 학적조회·제증명 발급<개정 2022.4.8.>
5.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
6. 학생 상벌·집회·행사 및 간행물 지도 감독
7. 학생자치회·학생복지·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4.8.>
8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
9. 학술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<개정 2016.4.1.>
10. 연구실 안전관리<개정 2022.4.8.>
11. 교원임용 등 인사관리<개정 2022.4.8.>
12. 감염병 예방 등 학생 보건관리<개정 2022.4.8.>
13. 삭제<2022.4.8.>
14. 산업체 위탁교육 관련 사항<신설 2016.4.1.>
15. 인권 및 학생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4.1.,2022.4.8.>
16. 그 밖에 교무·학생 및 실험 실습 등 교육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4.8.>

④ 기획홍보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6.4.1.>

1.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<신설 2016.4.1.>
2. 대학의 대외 홍보<신설 2016.4.1.>
3. 학생 해외유학·연수 및 여행에 관한 사항<신설 2016.4.1.>
4. 대내외(국제) 교류 협력<신설 2016.4.1.>
5. 대학 특성화 등 재정지원 사업<신설 2016.4.1.>
6. 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<신설 2016.4.1.>
7. 대학관련 통계 업무<신설 2016.4.1.>
8. 입학 및 학생정원, 학과의 설치·폐지에 관한 사항<신설 2016.4.1.><개정 2022.4.8.>
9. 신입생 모집 등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<신설 2022.4.8.>
10. 그 밖에 기획 및 홍보, 입학, 대학평가 등에 관한 사항<신설 2022.4.8.>

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제반 규정의 제·개정 심사와 발령 등 규정 관련 업무 및 도의회 관련 업무<개정 2016.4.1.,2022.4.8.>
2.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, 보안 및 통계업무<개정 2016.4.1.>

3. 민방위, 예비군에 관한 업무<개정 2016.4.1.>
4. 교원 외의 직원 인사관리<개정 2016.4.1., 2022.4.8.>
5. 급여·연금·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4.1.>
6.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<개정 2016.4.1.>
7. 시설물의 영선 및 유지관리<개정 2016.4.1.>
8. 국·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<개정 2016.4.1.>
9. 각종 물품의 수급 및 차량 운영·관리<개정 2016.4.1.>
10.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운영<개정 2016.4.1.>
11.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수급 관리<개정 2016.4.1.>
12. 삭제<2022.4.8.>
13. 삭제<2022.4.8.>
14. 실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<개정 2016.4.1.>
15. 실습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4.1.>
16.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4.1.>
17. 해기품질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4.1.>
18. 해기품질 관련 위원회의 운영<개정 2016.4.1.>
19. 실험·실습 기자재 및 재료 수급 관리<개정 2016.4.1., 2022.4.8.>
20.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<개정 2016.4.1.>

⑥ 산학협력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산학협력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수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3. 취업·창업 교육·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
4.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
6.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
7. 4차산업 실현, 창의 혁신 교육·지원에 관한 사항
8. 산·학·연·관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산학협력 및 취업·창업 및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
제41조(부속기관 및 특수법인) ① 강원도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관과 학생생활관, 평생교육원을 두며, 관계법령 또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.<개정 2022.4.8.>

② 강원도립대학교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.<개정 2022.4.8.>

③ 특수법인과 부속기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2.4.8.>

(이하생략)